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6108
----------	------

발의연월일 : 2024. 12. 2.

발 의 자 : 한준호 의원 등 170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창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이창수

직 위 : 검사(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여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비위는 그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탄핵 외에는 ‘파면’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아래 구체적 탄핵 사유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 피소추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허위 발언을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헌·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은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포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하고 있는데, 피소추자는 스스로 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하였으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및 배경¹⁾

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였던 김건희는 한국 내 BMW 공식 딜러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로 차량 할부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도이치파이낸셜(주)’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대량 매수하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 7. 8.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 등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취임 후인 2020. 2. 17. 언론은 2013.경 경찰청 중대범

1)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배경을 먼저 서술할 필요가 있다.

죄수사과가 진행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위 보도가 인용하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정필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였고, 김건희는 이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위 이정필에게 맡긴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위 내사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도이치모터스 회사 자료에 관한 제공을 요청했으나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여 결국 내사를 중지했다는 것이다.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과 수사 개시

언론사의 보도는 국가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경찰이 내사를 통해 주가조작 범죄 수사 개시에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검찰 고위층 가족이 연루된 탓에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의 비협조로 수사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2020. 4. 7.경 손준성(당시 검사)이 관여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의 맞고발 사건 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형사부에 배당되면서 김건희가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었다.

다.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수사 부담으로 인한 수사 미진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감으로 최초 배당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같은 청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 재배당된 끝에 고발장 접수 후 약 6월이 경과한 2020. 9. 25.경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자신과 측근 한동훈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잦은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권 축소를 지향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수사 부담감으로 검찰 내부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는 등 수사에 진척이 없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2020. 10. 19.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

손을 우려하여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배
우자 및 인척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지휘를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 검찰의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팀이 수사를 방치하면서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감찰 방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동재
기자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건을 조작하
려 했다”라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과
수사가 개시되자,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에
게 부당한 지시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 한동훈의
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위
부장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직무 회피 의무에 반하여 위법한 수사 지휘를
하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와 같이 이해충돌 사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박탈되거나, 이해충돌 회피의 직무
상 의무에 따라 수사지휘권 행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비롯해
본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등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
해하였고, 결국 이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다.²⁾

바. 강제수사 개시 후 김건희에 대한 수사 배제

윤석열은 2021. 3. 4. 돌연 검찰총장 사퇴의 입장을 밝혔고,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제야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본격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여 지난 2021. 7.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복수의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같은 해 10.경 부터 11.경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연이어 구속기소 되었으나, 김건희는 여전히 피의자 조사나 영장 집행 등의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사.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에 대한 기소 및 유죄 선고와 김건희 명의 계좌의 주가조작 관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3. 2. 10.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를 포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건희에 대해서는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범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2)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으로 임명하여 항소심 소송지휘를 맡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본인이 당사자나 다름없는 이 사건에 관해 1심 소송대리인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등 위법한 소송지휘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 임명된 소송대리인이 입증 노력을 게을리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를 받은 끝에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1, 2심이 결론이 달리 나왔던 이 사건 상고를 이례적으로 포기하여 이해충돌 사안에 관해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소송지휘를 하는 전례 없는 위법한 행태를 보였다.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김건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이른바 ‘전주’로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을 제공한 사람 중 김건희가 이미 기소된 손건희 다음으로 많은 돈을 제공하였고, 그들 중 1, 2차 주가조작에 그 돈이 모두 활용된 ‘전주’는 김건희가 유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검찰이 선고를 앞둔 2022. 12. 30.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서 모든 주식거래 자료를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심리(審理)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김건희는 최소 13.9억 원, 그 모친 최은순은 최소 9억 원 이상을 각각 얻어, 김건희 모녀가 합계 약 22.9억 원 이상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아.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소환 시도와 윤석열의 수사팀 교체를 통한 노골적 수사 방해

2022. 1.경 이미 소환을 통보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건희에 대한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2022. 5. 23.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던 송경호 검사장은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형사법 집행할 것” 이라고 답하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가 담보상태에 머무르다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판결이유 등에 김건희 주가조작 관여 및 수십 억대 이익 취득이 확인되자 김건희 소환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였고, 상황이 이에 이르자 소환을 추진하는 검찰과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사이 갈등설이 노출되는 등 대통령 및 법무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가 여러 경로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해충돌 사안인 배우자 수사에 관한 내·외부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소환 조사를 고집하자 정기 인사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5. 14.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장, 같은 청 김창진 1차장, 고희곤 4차장 등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부에 대한 교체인사를 단행하여 사실상 김건희 소환을 막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또 이 교체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낳게 되었다.

자. 피소추자의 ‘총장 패싱’ 방문 조사 등 봐주기 수사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소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며,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2024. 5. 14.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철도 아닌 때 본인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장으로 영전시킨 의도에 충실하게 2024. 7. 20. 소환조사가 아닌 김건희가 지정하는 모처에서의 비공개 피의자 방문조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이 조사 강행 과정에서 조사 시작 10시간 가량 지난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여 인사에 이은 두 번째 ‘총장 패싱’ 논란이 발생하였고, 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대통령 실 경호관에게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황제 조사’ 논란까지

발생하였다.

차. 형식적 수사 종료 후 예정된 불기소처분

피소추자가 지휘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은 이후 2024. 9. 7. 김건희 모친 최은순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였다. 곧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2024. 9. 1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기소된 인원 전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부분 형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른바 ‘전주’로 구분된 손건희에게까지 방조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김건희에 대한 기소 여론이 폭발하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피소추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언론에 수사팀발 ‘김건희 불기소처분 예정’ 사실을 흘렸고, 이에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은 물론 야당 등에서 피소추자가 직접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여론까지 비등하자, 검사장의 통제가 쉽지 않은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피하면서도 본인이 미리 결론 내린 ‘불기소결정’에 형식적 명분을 더하기 위해 2024. 10. 16. 그간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레드팀’ 검토를 마쳤으며, 그 다음날인 2024. 10. 17. 최종 불기소처분을 단행하였다.

카. 권한없는 검사의 수사참여 지시

피소추자는 본인이 지휘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사가 직무관할 밖의 수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이 필요한데, 피소추자는 김민구 검사를 직무대리 명령 없이 직무관할 밖의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의 유죄 증거

피소추자는 김건희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아래와 같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무시하고, 불기소처분을 강행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 가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이창수의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피소추자의 명백한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위법한 범죄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가. 피소추자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 요지

피소추자가 지휘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은 불기소결정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기자들을 상대로 장시간 불기소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다.

김철 불기소결정서 결론

-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피의자 명의 계좌들에서 일부 시세조종성 주문 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권오수 등과 이사건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피의자에게 개별 거래 당시 시세조종의 고의 및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나. 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48회에 걸친 김건희 계좌 통정 거래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사건(이하 ‘공범 사건’이라 한다) 1, 2심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이른바 ‘2차 시기(2010. 7. 경부터 2012. 12. 7.경까지)’의 102건의 통정 거래 중 48건(47%)이 김건희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범 사건 1심 판결문에만 김건희 이름이 37회 등장하고, 같은 2심 판결문에는 이보다 늘어 80여 회 김건희 이름이 등장하는 등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다.

다. 김건희의 주가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래 행위

공범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김건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 2010. 6. 말 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증권사 자동녹음과 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는 실패로 결론 난 1차 작전 후반에 보유 물량이 너무 많아 주가 하락 시 큰 손실이 날까 염려하며 주식을 매도

하는 정황이 녹취록 기재로 명확히 드러난다.

2010년 6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직접 통화 녹취록
○ 2010. 6. 29.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주 매도 · 대신증권 담당자 : 예 교수님 전데요, 일단 오늘 2,900원에 2만 주만 처리됐어요. · 김건희 : 2,900원예요? · 대신증권 담당자 : 예 예 2만 주만 팔았어요. · 김건희 : 아, 그럼, 송금은 얼마가 들어온 거죠? · 대신증권 담당자 : 그러면 이제 오늘 2만 주 팔고 어저께 8천 몇 개 팔고 지금 8천, 8,100만 원 정도 있어요 지금. · 김건희 :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그렇게 팔아주세요
○ 2010. 6. 30.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5만 주 매도 · 대신증권 담당자 : 오늘 일단 2,900원에 5만 개 팔았어요, 5만 개 · 김건희 : 5만 주요? · 대신증권 담당자 : 예. · 김건희 : 아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인제요?
○ 2010. 7. 1. 통화 녹취, 매도 無 · 김건희 : 물량 많으니까 또 정리를 하려는 거죠
○ 2010. 7. 9.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 5천 주 매도 · 대신증권 담당자 : 예, 오전에 2만 5천 주 2,920원에 정리하고 지금 만 주 3,050원에 만 주 정리했어요. · 김건희 : 예 예 알겠습니다. 총 몇 주 남았죠?
○ 2010. 10. 8.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27만 주 매도 · 김건희 : 많으니까, 물량이 (중략) · 김건희 : 더 팔 수는 없죠 아직 좀 둘까요? (중략) · 대신증권 담당자 : 일단 부담은 많이 덜어놨으니까

김건희는 2010. 10. 21. 이른바 주가조작 2차 작전이 개시되자, 아래 표와 같이 물량을 급하게 정리했던 날로부터 20일 남짓 지난 때인 2010. 10. 28.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6억 원이라는 거액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이상 거래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위 2차 작전세력들과의 사전 교감이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매매 행태이다. 즉, 김건희가 위 주가조작 세력과의 사전 교감 하에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거래행위인 것이다.

1차 작전 말미 ‘매도 러쉬’ 에서 2차 작전 시작 직후 3주 사이 갑자기 집중매수

2010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10.17	18	19	20	21 2차 작전 시작일	22	23
	24	25	26	27	28 1억 6천 7백여만 원	29 3천만 원 가량	30
	31	11.1 1억 8천여만 원	2 8천 4백여만 원	3 3억 2천여만 원	4 3억 8천여만 원	5	6
	7	8	9 3억 8천여만 원	10 8백여만 원	11 2천 7백여만 원	12 1천 2백여만 원	13
	14	15	16	17	18 1천 4백여만 원	19	20

라. 주가조작 일당의 지시에 따른 김건희 통정 거래 증거의 존재

검찰 불기소처분의 핵심 근거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 사건 제1심 판결문 기재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그 공범들이 문자로 누군가에게 매도 주문을 넣을 것을 지시하자, 김건희는 그 직후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직접 매도 주문을 넣고, 매도 주문이 정한 가격 그대로 매도 물량 전부를 누군가가 사가는 과정까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구두 보고받은 명확한 물증이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위 제1심 판결문 기재에 증거로 제출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을 더하여 보면, 2010. 10. 28. 13:02:07경 주가조작 공범 민태균이 공범 김기현에게 문자를 보내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를 정해진 가격에 주문하고, 증권사 직원은 그 주문에 따라 해당 물량을 주가조작 공범이 그대로 받아 가는 정

황까지 김건희에게 보고하는 사정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 11. 1. 11:22경부터 같은 날 11:44:39경까지 공범 김기현, 민태균 등이 누군가에게 8만 주 매도 주문을 준비시키고 지시하자, 그로부터 50초 뒤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정확히 8만 주 매도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받은 통화녹음이 확인된다. 이는 김건희가 위 주가조작 공범들과의 공모에 의한 통정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2021고합982)

○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2110) :

- 민태균이 2010. 10. 28. 13:02:07경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 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약 3분 뒤인 13:05:40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0,000주의 매도주문들이 제출되고, 곧바로 피고인 김병년 및 민태균 계좌에서 주당 3,100원의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2110) :

- 2010. 11. 1. 11:22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 시킬게요” 라고 답하고,
- 피고인 김기현이 11:44:32경 “매도하라하셈” 이라고 하자
- 11:44:39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0,000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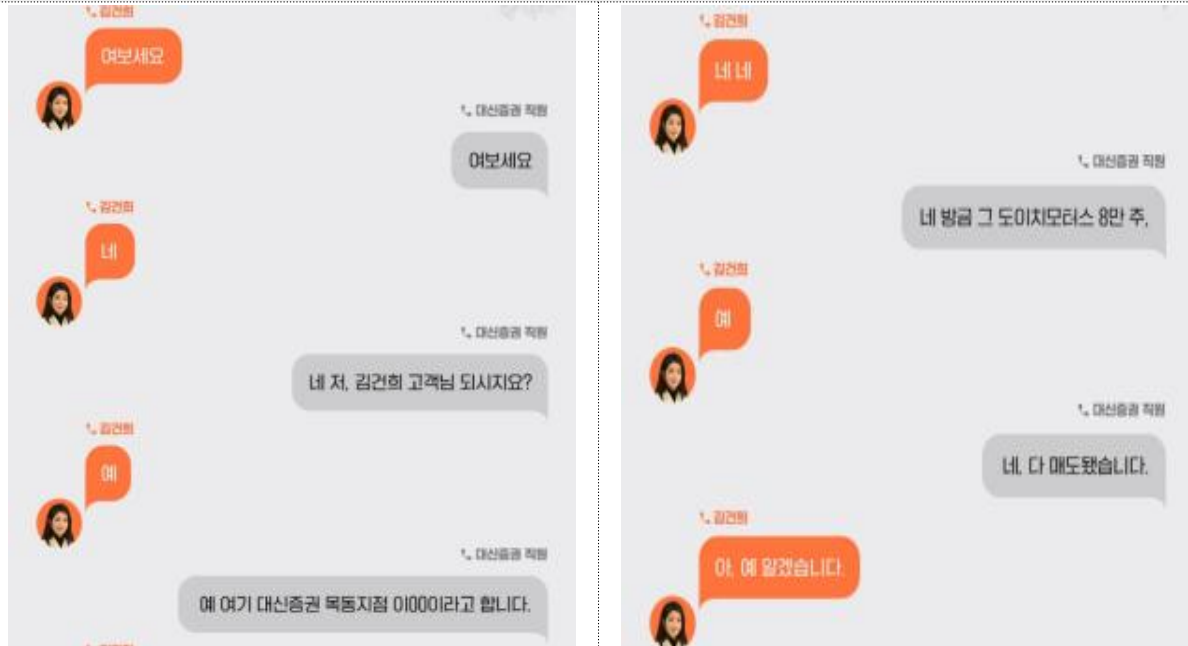
(2024. 9. 12)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날짜	시간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
2010. 10. 28.	13:02:07	M	C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 하시고 전화 주실듯
2010. 11. 1.	11:22:25	C	M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해주셈..
2010. 11. 1.	11:23:49	M	C	준비 시킬게요
2010. 11. 1.	11:44:32	C	M	매도하라하셈

2010년 10월 28일 13:09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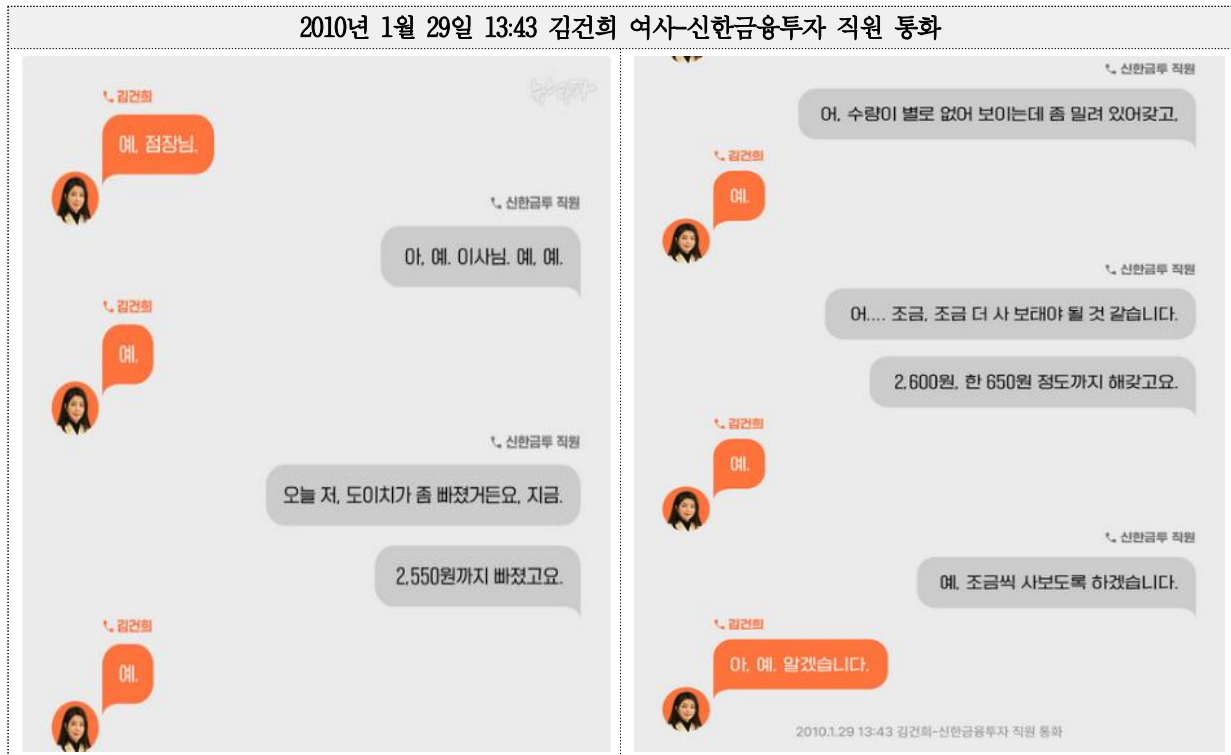
2010년 11월 1일 11:45분 29초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주문



마. 김건희 시세조종성 거래 인지 사실 및 그에 부합하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

공범 사건에서 제출된 김건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을 보면 김건희는 2010. 1. 29. 13:43 위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주당 2,550원으로 떨어졌으니 2,650원으로 오를 때까지 매수할 것을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대상 주식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올리려는, 즉,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다.



위 문자내용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직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시세조종을 김건희가 직접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건희의 시세조종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다.

2021. 12. 16.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 검찰 진술조서

- 검사 : 위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주가가 떨어지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가요.
- 증권사 직원 : (한참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가 먼저 주식을 사자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제 추측입니다.

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의 김건희에 관한 진술

공범 사건 주가조작 선수에 해당하는 이정필은 2021. 9. 23. 검찰에 출석하여 김건희, 권오수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모의한 정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김건희가 주가조작 공모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2021. 9. 23. 자 이정필 피의자 신문조서 중(2022. 12. 30. 검찰 종합의견서)

- 문 : 권오수가 김건희를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 답 :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김건희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문 : 계속 진술해 보겠는가요
- 답 : 김건희를 소개 받고, (중략)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 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주완(이정필 가명)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사. 김건희와 공범 사이 주가조작 손실 보전성 금전 거래

공범 사건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은 실패로 끝난 1차 작전이 종료한 뒤, 1차 작전의 실패로 김건희가 손해를 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건희는 위 1차 작전의 실패로 4,7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2021. 10.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김건희의 주식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4개월 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를 통해 위 이정필이 2010. 3. 4. 지인 명의로 정확히 김건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4,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김건희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손익을 감수하고 주식을 투자한 것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주가조작 세력이 공모에 참여한 전주 김건희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증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2020. 초경 이정필과 직접 통화하면서 이정필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김건희와 이정필 사이 수수 목적은 다르지만, 돈 수수 사실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진술로도 확인되었다.

아. 검찰 수사 본격화하자 김건희와 공범 사이 한 달간 40여 회 통화

2021. 10.경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2010.경 4개월쯤 맡기고 4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본 후 연락을 끊었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는 2020.경 이종호와 40여 차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김건희는 주가조작 공범들과 수사 대응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이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김건희-이종호 1달간 40차례 통화문자(출처: JTBC)	
날짜	횟수
9월 23일	통화 3회, 문자 1회
9월 24일	통화 7회, 문자 3회
9월 25일	통화 9회
9월 27일	통화 1회
9월 28일	통화 4회
9월 29일	통화 3회
9월 30일	통화 5회
10월 5일	통화 1회
10월 6일	통화 2회
10월 20일	통화 1회
계	통화 36회, 문자 4회

자. 공범 김기현(2차 주가조작 주포) 도피 중 편지 속 ‘김건희’

공범 김기현은 2021. 10.경 또 다른 공범인 민태균(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에게 도피 중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됐는데 그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적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기사내용에 따르면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김기현에게 위 편지 관련 내용을 묻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범들은 김건희와의 공모관계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김건희와 공범 사이 문자 교환내역 확보

검찰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김건희가 도피 후 검거되어 구속된 공범

민태균과 2차 주가조작 기간 직접 문자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매도 타이밍’을 교환했던 사실까지 확인했다. 즉, 이미 김건희가 주가조작 선수들과 조작 대상 주식의 매도 타이밍에 관해 연락을 주고 받은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JTBC, 김건희 여사와 민태균 사이의 문자(2024. 9. 27)		
수발신	일시	내용
발신	생성일시: 2012-01-09 13:51:38 읽은일시: 2012-01-09 13:51:38	· 사장님, 덕분에 금융실사 오전 중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보관중이니 직원을 보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신	생성일시: 2012-01-09 14:11:30 읽은일시: 2012-01-09 14:11:30	· 예~ 알겠습니다
발신	생성일시: 2012-01-09 14:15:29 읽은일시: 2012-01-09 14:15:29	· 아 그리고 금요일 행사장에서 인사를 못드렸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하로 내려 가실 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번거롭게 헤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생성일시: 2012-01-11 15:21:40 읽은일시: 2012-01-11 15:21:40	· 팩스번호부탁합니다.
발신	생성일시: 2012-01-11 15:21:59 읽은일시: 2012-01-11 15:21:59	· 02-XXX-XX 입니다.
수신	생성일시: 2012-01-13 12:19:50 읽은일시: 2012-01-13 12:19:50	· 민태균입니다. 계좌 번호 부탁드립니다.
발신	생성일시: 2012-01-13 12:21:28 읽은일시: 2012-01-13 12:21:28	· 신한 김건희 XXX-XXX-XXXXXX입니다~

카. 소결 - 김건희 주가조작 직접 관여 증거의 충분한 확보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은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소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위에 한정하더라도 김건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 거래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수 회의 거래는 김건희가 직접 거래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그 거래시점 공범들의 주식 매도 지

사와 김건희의 직접 매도주문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까지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이 권오수와 주가조작을 공모·지시받는 과정에 김건희가 동석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후 공범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는 공범 민태균, 이종호와 직접 40여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그들로부터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까지 진술로 확보하였다. 검찰의 위 수사결과들은 공범 사건 1, 2심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 검찰의 증거기록과 공범 사건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여 증거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8대 유죄 증거’	
①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총 48회 주가조작 이용
②	1차 작전 물량 ‘팔더니’, 2차 작전 시작 후 다시 ‘풀매수’
③	2010. 10. 28.과 11. 1. 대신증권 통정거래, 민태균-김기현 문자메세지
④	2010. 10. 28.과 11. 1. 김건희 여사-대신증권 직원 직접 주문 전화 녹취
⑤	2010. 1. 19. 김건희 여사-신한투자증권 직원 시세조종 인지 전화 녹취
⑥	법원, 갑작스러운 집중매수를 주가조작 사전인지 정황으로 판단한 판례
⑦	이정필(주가조작 1차 주포) 피의자 신문조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진술
⑧	2020년 김건희 여사, 이정필과 직접 통화해 “받을 돈 더 있다”
⑨	이정필, 김건희 여사 손실액 4,700만 원 보전
⑩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영장 청구 無
⑪	2020. 9. 김건희 여사-이종호 한 달간 40차례 연락
⑫	김기현(주가조작 2차 주포) 도피 중 편지에 김건희 여사 언급
⑬	2012. 1. 김건희 여사-민태균(前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문자메세지
⑭	김기현, ‘BP 패밀리’ 에 김건희 여사 포함 진술
⑮	검찰,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이정필-김기현 녹취 공개
⑯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김건희 모녀 총 23억 원 매매차익
⑰	1:2심 재판부 유죄 판결 통정 거래, 김건희 여사 ‘직접 주문’ 진술
⑱	유죄 판결 통정 거래 주문에 김건희 여사-권오수-김기현 각자 다른 입장

3. 헌법 및 법률위배 행위

가. 사실관계 -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의 존재

1) 피소추자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

가) 피소추자의 임명 경위와 절차적·실체적 공정 수사 필요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3. 서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이미 내사에 착수하였다가 현직 고위 검사의 배우자가 그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무마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그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압수범죄로 가려져 있다가, 김건희의 배우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2020. 4. 7. 정식 고발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더 이상 미루거나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 공범 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이르러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유독 당시 대한민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수장의 배우자이자 현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만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 사건 2심 판결마저 유죄가 선고되고,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 스스로 김건희와 유사하다고 지목한, 이른바 ‘전주’ 손건희에 대해서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자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송경호마저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내비쳤고, 이는 검사 인사권자인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 갈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결국 비인사철임에도 대통령은 법

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건희 직접 수사 의지를 보였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차장검사 등 수사지휘라인 일체를 교체하여 피소추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본다면 피소추자는 봐주기 수사로 투입된 검사장이라는 국민적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수사 대상자의 지위 고하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나) 노골적인 수사 편의 제공

피소추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최고·최종 지휘 책임자³⁾로서 마땅히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 및 진행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종 지휘 책임자인 피소추자의 책임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몇 차례 소환 통보 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소추자는 수사대상 김건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한편 방문조사를 고집하자, 검찰총장에게조차 수사 절차에 관한 일체의 보고 없이 소환 조사를 포기한 채 김건희가 지정한 장소인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3)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된 상태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인 피소추자가 위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다.

은 경호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비공개 밀실 조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달리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김건희가 다른 공범들과 어떤 의사연락이 이뤄졌는지에 관하여는 오로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로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누구나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정상적 인사조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취임한 탓에 수사의지에 관하여 국민적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에게 이례적인 수사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이미 공범들이 모두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그간 대통령실과 검찰 스스로 김건희와 유사한 대상이라고 인정했던 ‘전주’ 손건희에게 주가 조작 방조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사 피소추자가 이끈 수사팀의 최종 결론이 ‘혐의없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 일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소추자는 이러한 절차도 생략한 채, 법령에 근거도 없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또 다른 이른바 ‘레드팀’을 만들어 검토시키는 양 겹치레만 한 끝에 최종 ‘불기소처분’ 하였는바, 이로써 형식적·절차적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 수사, 봐주기 수사의 행태를 보였다.

다) 유죄의 증거를 외면한 위법한 불기소처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사의 증거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에 참여하여 확인한 내용과 판결문 기재, 거기에 기자들의 추가 검찰 취재로 일부 공개된 증거에만 의존하더라도 김건희가 공범 사건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도합 18건이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김건희와 공범 사이 의사연락을 보여주는 통화목록과 문자,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로 확인되는 김건희의 통정 거래 참여 등의 물증에 더해 공범들의 보충 진술까지 김건희의 유죄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보고서는 김건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2억 9천만 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등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단 한 번의 강제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굴욕적인 ‘출장 조사’ 만 마치고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를 수사한 끝에 최종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함에 있어서는 사소한 사실 하나까지도 오류나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됨이 마땅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와 그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김건희 불기소 직후인 2024. 10. 17. 행한 검찰 출입기자 설명회와 보도자료 배포 및 이어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아래와 같이 최소 4번의 명백한 거짓말을 반복했다. 피소추자와 그에 속한 검사들의 이런 반복된 거짓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상 직분을 저버린 위법임이 명백하다.

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김건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피소추자가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직후인 2024. 10. 17.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위 청 소속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 주재 언론 브리핑을 열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이 주가 되긴 했지만 도이치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는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 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이미 한 영장청구는 이

미 지난 2023. 3. 2.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소추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병행되었는지 여부

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같은 날 브리핑 과정에서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이 주가 되긴 했지만, 도이치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소추자 또한 이에 호응하듯 익일인 2024. 10. 18.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오수라는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고…” 라고 밝혀,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수사가 병행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날은 2020. 11. 9.일 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착수는 그보다 9일 늦은 2020. 11.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시되었다.

결국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강제수사를 몰래 포기한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고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고, 피소추자는 이를 두둔하고자 위 최재훈이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이미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수사를 병행하여 진행한 탓에 혼동한 것처럼 재차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는 피소추자와 그 소속 검사가 김건희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회피하고자 주권자인 국민을 연거푸 속이며 거짓말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이라 할 것이다.

다) 이른바 ‘전주’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혀 없었는지 여부

위 최재훈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김 여사는 계좌주로서 기본적으로 참고인이다. 계좌 자금을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에 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 조사를 왜 빨리 안했냐고 하면 저희도 답답하다. 계좌주 중 압수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않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라는 언론의 비판에 반박하였다.

피소추자 또한 익일 국정감사장에서 유상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방법으로 ‘전주’ 중에는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 국정 감사자료로 제출한 수사목록 기재에 따르면, 검찰은 2021. 9. 7. 김건희와 같은 계좌주에 불과한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음에도, 피소추자는 김건희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를 감추기 위해 국정감사에서조차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다.

라) ‘이정필에게 수익금 30~40% 지급’ 대화에 김건희 참여 여부

이른바 실패한 주가조작 범죄인 ‘1차 작전’ 주포로 참여한 이정필은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주식 매매 관리로 얻는 이익에 관해 “김여사로부터 수익의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라고 주가조작의 범죄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정필은 이런 대화를 2010. 1.경 공범 권오수 소개로 김건희를 만났을 때 “대화로 나눈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즉 이정필은 주가조작 약정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이와 같은 고율의 주식 매매 관리 수수료율에 관한 대화가 이정필, 권오수와 함께 김건희까지 참여한 대화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정필은 이후 법정에서도 “그분(김건희)이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라고 했을 뿐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또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정필 초기 진술서가 언론보도에 나오면서 이정필이 김건희와 권오수를 처음 만날 때 권오수가 30~40% 수익 챙겨

주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정필이 법정 진술에서 ‘이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 법정 진술이 맞았다. 즉,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가 계좌 관리 잘해주면 30~40% 챙겨준다고 얘기한 걸 들었다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다.

나. 헌법 및 법률적 평가

1)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위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절대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곤란해하지만, 오히려 검찰은 이를 출석불응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유로 삼기까지 한다. 김건희 외 다른 국민이 생업으로 바쁘니 자택 근처 제3의 장소로 와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검찰이 이에 응할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런데도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건물로 가서 출장조사를 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도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헌법 제7조 제2항 및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려 376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까지 합친다면 그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36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소추자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가 당시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 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형법 제122조 위반에 따른 직무 유기와 성실의무 위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직무로 ‘범죄의 수사’를 명기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는 범죄 수사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이자 이 사건 수사의 최종 지휘 책임자로서 수사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수사 필요성을 정하고 그 정도를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소추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극히 일부의 수사기록 및 공범 사건 1, 2심 판결문에서조차 확인되는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채 단 한 번의 강제수사도 없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직무수행일 뿐 아니라, 자신을 검사 모두가 선망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임명해 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사적 보은의 감정으로 그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 강제수사를 포기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라는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수사직무의 의

도적 방임 또는 포기에 해당하는바, 이는 형법 제122조를 위반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 수장으로서 피소추자는 마땅히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수사팀이 수사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해 모두 고려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이를 지휘할 최종적인 행정책임이 존재하지만, 이를 방기한 채 부실한 수사 끝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4) 검찰청법 제5조 위반에 따른 검사의 직무관할 위반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의 직무관할로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검찰근무 규칙 제4조 제1항에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득이하게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대리 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소추자는 본인이 지휘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사는 법령을 준수하여 본인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지시하여 검찰청법 제5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관할을 위반하게 한 것이다.

5) 형법 제227조, 제229조 등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의 위증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특히 수사 대상이 인사권자의 배우자여서 국민이 공정한 수사 여부에 더욱 관심이 큰 사건이므로, 마땅히 사소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거짓도 허용해선 안 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거짓 자료의 제출이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와 그에 속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여부, ②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도 병행하였는지 여부, 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전주’라 불리는 다른 계좌주(계좌 제공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 ④ 주가조작 공범 이정필에 대해 김건희 주식

관리에 대한 고액 수수료 약정 언급 당시 김건희가 동석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명백한 위증을 반복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라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이처럼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통해 소속 수사팀으로 하여금 또는 직접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가 이뤄지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방임하고, 위증을 반복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배신하였는바, 이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 집행자인 검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법행위이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4. 중대성의 문제 - 위법의 정도와 탄핵요건 충족 여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피소추자의 범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피소추자가 범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였음

이 명백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법 위반행위는 탄핵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 속에서의 중대위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할 만한 위법의 의미에 관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609, 654-655;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21 참조)⁴⁾하여 탄핵심판청구의 인용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각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사건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를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정각부의 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

4) 헌법재판실무제요, 515,516쪽. ‘파면할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인지에 관하여, 피소추자가 보유한 공직(특히 대통령인지 아닌지), 문제된 위법행위의 경중(구체적인 헌법조항에 직접 위반한 것인지, 예정된 처벌의 정도), 위법행위의 성격(권력의 악의적 남용, 부패의 측면이 있는지), 위법행위로 초래된 결과(헌정질서, 국가기능, 국민의 기본권에 끼친 해악의 정도),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반규범적 의지) 등을 종합하여, 피소추자를 파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주석헌법재판소법 657쪽 참조바랍니다.

하여야 할 정도로 행정각부의 장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29).

그러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다르게,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따라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30), 선거라는 국민주권 행사의 결과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을 일응 제시하였다.

나. 국회 탄핵소추의 법적 의미와 탄핵소추에 필요한 위법의 정도

국회 탄핵소추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적 결단으로 형성된 헌법에서 정한 가중적 의결요건이라는 총의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사법의 고위공무원을 직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막강한 법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와 최종적 법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에 대응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소극적으로나마 견제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에서 주권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이에 복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가 취약한 대통령 일방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정한 가중적 의결요건을 충족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해제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주권 행사의 일환인 것이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피소추자 개인의 권리 침해여부를 논하는 일반적 공무원 징계절차와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 할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에게 위법이 인정되는 이상 임명직 탄핵 대상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파면할지 여부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있다 할 것이다.

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위법인지 여부

피소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서 그 산하에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4명의 차장검사가 존재하고, 검사는 그 하나하나가 단독제 관청으로서 개별 범죄수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피소추자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장 공석에 따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의 혼란이 초래되어 발생할 수 있는 공익 위해효과는 극히 경미하다. 뿐만 아니라 피소추자의 파면이 이뤄지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여 그 혼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소추자는 앞서 살핀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주권에 기반한 국가공무원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검사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인사권자에 대한 사적 보은의 관점에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국민과 그 대의기관인 국회에 위증과 허위자료의 제시를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는바, 마땅히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그 직에서 배제함으로써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긴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헌법과 법률은 검사에게 기소권 독점과 기소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또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 막대한 권한의 부여는 그에 따르는 책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량권 행사에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민주권주의 및 사법정의를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물론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형사사법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는 그 직무수행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하여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하는 것까지 검찰 독립성을 빙자하여 피해갈 수 없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권력행사의 최일선에 있는 피소추자의 검찰권 남용은 국가가 더 적극 견제할 수밖에 없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하고,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여, 검찰의 처분이 동일한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권력자와의 관계성 등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며,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법 앞의 평등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피소추자와 그의 지휘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대담하게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국민 전체를 기망하려 한 충격적인 사

건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해악이 크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검찰권이라는 국가권력을 인사권자에 대한 사적 보은을 위해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국가기관과 공정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피소추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사직에서 파면하고자 이 사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18. 4. 2.자 중앙일보 기사, 「[[단독]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
2. 2020. 2. 17.자 뉴스타파 기사,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3. 2024. 10. 17.자 뉴시스 기사, 「[[일지]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불기소까지」
4. 2020. 9. 17.자 뉴시스 기사, 「‘윤석열 부인·장모’ 수사 본격화 조짐..내부 갈등도 재연?」
5. 2020. 10. 30.자 천지일보 기사, 「‘尹가족 수사’ 배당 놓고, 이성운-검찰간부들 고성오가며 ‘충돌’」
6. 윤석열 징계사건 제1심 판결문
7. 2023. 2. 14.자 뉴스타파 기사,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분석 : 유죄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
8. 2024. 5. 15.자 중앙일보 기사, 「前검찰총장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교체? 단 한번도 없었다”」
9. 불기소결정문
10. 2024. 10. 10.자 뉴스타파 기사, 「김건희 새 녹취록...물량 부담에 ‘팔자’ 더니 2차 작전 개시되자 적극 매수」
11. 2023. 12. 14.자 뉴스타파 기사, 「〈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사건 판결문
13. 2023. 12. 21.자 뉴스타파 기사, 「[주간 뉴스타파] 김건희 녹취록 추가 공개… ‘선수’와 직접 소통, 시세 조종 알았다」
14. 2024. 10. 17.자 검찰 무혐의 보도참고자료
15. 2024. 9. 26.자 jtbc 기사, 「[단독] 검찰, 주포 송금과 김건희 손실액 일치 확인...보전 의심」
16. 2024. 10. 17.자 jtbc 기사, 「[단독] “받을 돈 더 있다” …김 여사, 도이치 논란 뒤 1차 주포와 통화」
17. 2024. 9. 23.자 jtbc 기사, 「[단독] 검찰 수사 본격화에 김건희-이종호 ‘1주일 간 36차례’ 연락」
18. 2024. 9. 27.자 jtbc 기사, 「[단독] “김건희만 빠지고” 도이치 주가 조작 ‘2차 주포’의 편지 전문을 공개합니다.」
19. 2024. 7. 24.자 시사저널 기사, 「“검찰 수사도 배달되나” “치욕” ...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역풍」
20. 2024. 10. 24.자 뉴스타파 기사, 「[주간 뉴스타파] 김건희 불기소, 검찰의 7가지 거짓말」